

미국 특허소송의 특징 및 경향



배진용

특허청 전자소사과 사무관

[목차]

들어가며

- 미국 특허소송의 특징 및 경향
 - I. 세계 최고의 특허수지 흑자국
 - II. 사법제도
 - III. 특허관할법원
 - IV. 비용과 시간
 - V. 특허소송의 최근경향
- 글을 마치며

들어가며

지난 호에서는 미국의 대통령과 특허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미국 경제의 번영 또는 위기와 함께 특허정책이 변화되는 흐름을 주시하면서, 현재 친 특허(Pro-patent) 정책¹⁾의 절정기이고, 매년 35만 건 이상²⁾이 출원되는 특허의 홍수시대이지만, 국제 유가의 급등, 곡물가의 상승과 미국의 모기지론으로 인한 경제 침체의 징후와 함께 미국의 특허정책도 천천히 그 방향을 변화하는 현상이 감지됨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최근 나타나는 특허정책 변화의 현상으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 하원 인터넷과 지적재산권 분야의 사법 분과위원회(법사위)³⁾에서 특허법 개정(Patent Reform)을 위하여 총 21차례 회의와 2007년 9월 7일 미국의 개정 특허법⁴⁾이 미국 하원을 통과되는 것이고, 특허정책의 큰 흐름이 다시 반독점 정책(Antitrust policy)으로 변경될 변곡점의 위치에 있다는 분석을 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의 미국 특허정책에 이어서 미국 특허소송의 특징과 경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친특허 정책(Pro-Patent) : 일본과 유럽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레이건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경제정책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의 전반적인 강화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경제정책

2) 특허청, 「미국특허로 바라본 한국의 기술경쟁력(국가·특허권자)」, 2007. 12. 31, 18면.

3) House Committee on the Judiciary Subcommittee on Courts, the Internet, and Intellectual

4) 미국 하원, 「The Patent Reform Act of 2007 Section-By-Section」, 미국 하원, 2007.

5) 미국 하원, 「To amend title 35, United States Code, to provide for patent reform」, 미국 하원, 2007. 4. 17일

미국 특허소송의 특징 및 경향

I. 세계 최고의 특허수지 흑자국

그림 1은 2006년도 기준의 국제 특허수지 흑자국과 적자국 현황을 나타낸다.

2008년 5월 13일자 매일경제 신문은 일본 국제무역투자 연구소의 집계를 소개하면서 2006년도 기준으로 미국은 359억 달러의 특허수지 흑자로 지적재산권 강국의 절대적인 위상을 과시하였고, 그 뒤로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이 2~4위의 특허수지 흑자국이라고 언급하였고, 한국은 특허수지 적자국으로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다.⁶⁾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일반 상품의 수출이 약 5% 정도의 경상이익을 가져오는 것과 보통 매출액의 약 5% 정도를 로열티로 지불하게 하는 관행을 고려하면, 특허수지 흑자는 일반 상품의 무역수지 흑자 20배와 맞먹는 효과라고 평가한다.

즉, 미국은 359억 달러의 특허수지 흑자액은 '359억 달러 × 20배 = 7180억 달러(한화로 약 720조 원)의 무역수지 흑자와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런 계산대로라면 미국은 매년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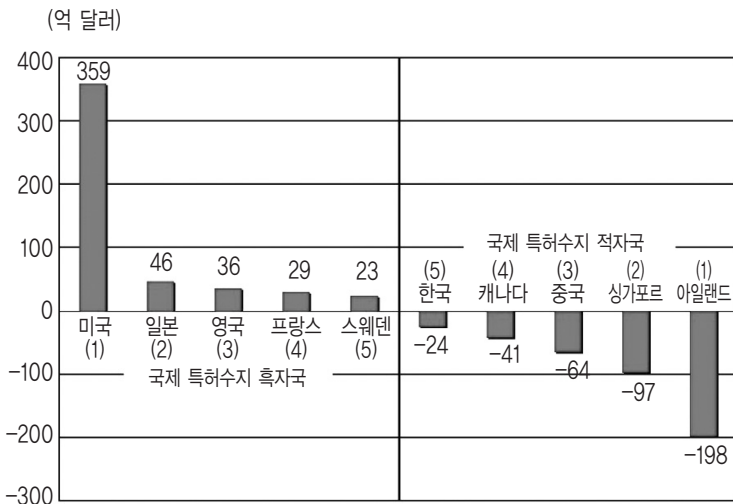


그림 1. 국제 특허수지 흑자국과 적자국 현황(2006년 기준)

무역수지 적자를 국제 특허수지 흑자로 상쇄시키고 있는 셈이고, 반면에 우리나라는 매년 수백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특허수지 적자로 다 까먹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최고의 특허수지 흑자국인 미국의 배후에는 특허권자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을 하는 미국의 특허법원과 소송제도가 있으며, 미국의 특허법원과 소송제도는 미국을 지적재산에 절대적인 강국으로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미국의 사법제도, 특허관할법원, 비용 및 시간, 최근경향을 이후의 절에서 살피기로 한다.

II. 사법제도

미국과 영국 등의 영미법계 국가들은 유럽, 독일, 일본, 한국 등의 대륙법계 국가들과 다소 상이한 법적 특징을 2가지 지니고 있다.

첫째, 영미법계 국가들은 판례(判例)주의를 취하고 있고, 둘째, 영미법계 국가들은 상급법원의 선례가 하급법원을 구속하는 선례구속력(先例拘束力)⁸⁾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

대륙법계 국가는 성문법(成文法)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판례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지니고 있다. 물론 대륙법계 국가의 각 법원도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비슷한 판례의 경향을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상급법원(특히 대법원)의 판례라도 하급법원에서 반드시(절대적인) 구속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영미법계 국가는 판례(判例)주의와 선례구속력(先例拘束力)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지기 때문에 상급법원의 판례는 하급법원에서 법률과 같은 정도로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980년대 미국이 정책적으로 추진한 친 특허(Pro-patent)정책은 대법원과 연방순회

6) 매일경제신문, 「특허수지 적자 25억달러 세계 5위」, 2008.05.13일자 기사.

7) 한국이 해외에 지급한 특허 사용료 - 2003년 : 35억 700만 달러/ 2004년 : 44억 5000만 달러/ 2005년 : 45억 6000만 달러/ 2006년 : 44억 9000만 달러/ 2007년 50억 8000만 달러 (한국은행 제공)

8) 선례구속력의 원칙을 선결례 원칙이라고도 한다.

항소법원(CAFC)에서 특허권자에게 가장 유리한 판례를 만들어 냈으므로 인하여 미국의 모든 지방법원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지니게 되었다.

III. 특허관할법원

현재 미국의 법원구조는 94개 연방지방법원(District Court), 13개 연방항소법원(Court of Appeals), 1개의 대법원(Supreme Court)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13개 연방항소법원(Court of Appeals)은 11개 순회법원(Circuit)과 워싱턴 D.C.를 관할하는 항소법원 1개 및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건을 전담하는 연방순회 항소법원(CAFC)⁹⁾ 1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는 미국의 11개 순회법원(Circuit)과 담당지역을

나타낸다.

1980년대 미국 대통령인 레이건¹⁰⁾은 1970년대 제1, 2차 석유파동¹¹⁾과 함께 세계시장에서 일본, 유럽 등과의 무역 경쟁의 경쟁력 약화를 타개하기 위한 강력한 친 특허(Pro-patent)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항¹²⁾중 하나는 위에서 언급한 연방순회 항소법원(CAFC)을 설립하여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건의 관할을 집중시키는 것¹³⁾이다.

따라서 미국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건의 제1심은 연방지방법원이 되며, 제2심은 연방순회 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Federal Circuit : CAFC)으로 통일화되며, 최종 상고심은 미국 대법원(U.S. Supreme Court)이 되었다.

레이건 대통령이 추진한 친 특허(Pro-patent) 정책은 1982년 10월 1일 미국은 연방순회 항소법원(CAFC)을 설립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발휘되기 시작하였는데 연방순회 항소법원(CAFC)은 특허소송의 제1심 법원이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제2심을 담당하여 특허사건 관할을 집중하여 미국의 특허소송의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특허소송에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의 문제는 전체 소송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연방순회 항소법원(CAFC)을 특허전담 항소법원으로 설립함으로써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서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제공하였고, 이로 인하여 특허소송의 급증¹⁴⁾을 야기하게 되었다.

미국 대법원에서의 상고는 대법원의 재심리 허락을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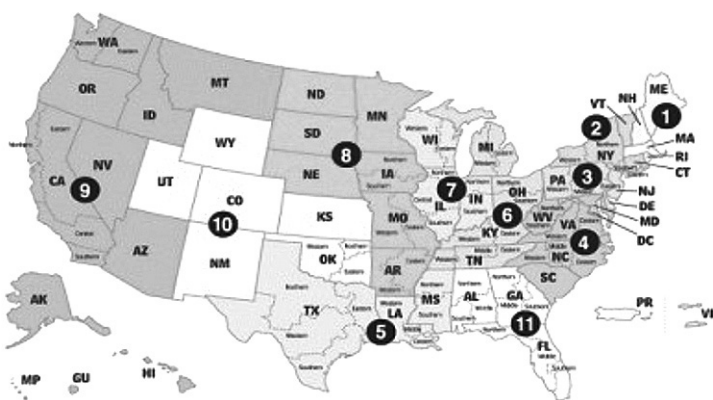


그림 2. 미국의 11개 순회법원(Circuit)과 담당지역

9) 현재 CAFC는 워싱턴 D.C.의 Howard T. Markey National Courts Building에 위치하고 있다.

10) 로널드 레이건(Ronald Wilson Reagan : 1911년 ~ 2004년) : 미국의 제40대 대통령, 영화배우이였으며, 정치에 입문한 대통령, 미국 경제의 친 특허(Pro-Patent) 정책으로 1980년대 미국 경제를 약진시킨 대통령

11) 1차 석유파동 : 1973년 시작된 중동정쟁(아랍 및 이스라엘 분쟁)으로 야기되어 유훈의 고시가격이 인상되고 1974년 배럴당 5.119달러에서 11.651달러라고 인상하면서 자원민족주의를 강화시킨 석유파동

2차 석유파동 : 1978년 12월 OPEC 회의해서 배럴당 12.70달러에서 단계적으로 14.5%의 인상을 경의했고, 이해 12월 말에 이란은 국내의 정치 및 경제적 혼란을 이유로 석유생산을 대폭 감축하여서 현물시장에서 1배럴당 40달러로 증가된 석유파동

12) 친 특허(Pro-patent)정책의 주요 추진내용

- 1) 미국특허상표청(USPTO)의 예산확충과 위상 및 권한 강화
- 2) 연방순회 항소법원(CAFC)을 설립하여 지식재산권 사건의 관할을 일체화함
- 3) 특허의 재심사 제도와 보호기간 연장
- 4) 신기술(생명공학,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대상 확대
- 5) Bayh-Dole Act : 미국 산업계로 기술이전 촉진법을 입안
- 6) 지적재산권과 연계한 미국의 총체적 무역정책

13) 연방순회 항소법원(CAFC)은 상표를 제외한 특허관련 사건, 국제무역, 손해배상, 관세, 계약 등을 전속 관할하고 있다.

제로 하기 때문에 극소수의 사건¹⁴⁾을 제외하고는 상고심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연방순회 항소법원(CAFC)의 판결은 판례(判例)주의와 선례구속력(先例拘束力)의 원칙을 가진 미국에서 거의 확정적으로 강력하게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1982년 탄생한 연방순회 항소법원(CAFC)은 다음의 3가지 면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친 특허(Pro-patent)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첫째, 연방순회 항소법원(CAFC)은 특허권자에게 최고 3배의 손해배상을 인정¹⁶⁾¹⁷⁾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으며,

둘째, 특허권 남용(Patent misuse)을 인정한 다른 연방항소법의 판결에 대해서도 반대의견¹⁸⁾을 제시하고 있고,

셋째, 특허침해가 처음 시작된 시점부터 판결 시까지의 심리전 판결 이자(Prejudgment interest)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고 있다.

한편, 특허소송 시 연방순회 항소법원(CAFC)의 하급심 판결에 대한 파기환송 비율을 조사한 2001년 연구결과¹⁹⁾에 따르면, 연방순회 항소법원(CAFC)에 항소된 특허사건의 약 36.6%에 해당하는 판결이 하급심으로 파기 환송되었다. 이를 단순화시키면 하급심에서 패소한 자가 연방순회 항소법원(CAFC)에서 항소하여 승리할 확률은 약 1/3을 약간 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최근에 연방순회 항소법원(CAFC)의 파기환송 비율은 약 20~30%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밖에 미국정부를 상대로 하는 특허권 침해 배상청구는 연방배심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 CIT)에 제소

한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방법인 특허법에 관한 사건은 연방법원에 제소하게 되지만 특허 실시권 계약은 주(州) 계약법에 따라 주 법원이 관할을 하고 있다.

IV. 비용과 시간

미국의 특허소송 비용은 사건의 복잡성과 소송대리인의 비용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일반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서 최종판결을 받기까지의 소요된 비용은 통상 200만 달러에 달한다. 그 중 1999년 캘리포니아에서 사실조사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약 12만 달러²⁰⁾로 조사되었다.

2001년 미국 지적재산권법학회(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의 조사에 따르면 뉴욕 로펌이 소송대리를 맡아 최종판결까지 간 경우의 비용은 약 1,999,000 달러이고, 캘리포니아 로펌을 이용한 경우 약 1,750,000 달러가 소요되었다. 반면 중부의 미네폴리스 로펌을 이용한 경우 약 1,150,000 달러의 비용이 들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동일한 사건이라도 동부와 서부가 중부에 비하여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연방순회 항소법원(CAFC)로 항소할 경우 그 비용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대략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사이로 짐작²¹⁾되며 사안이 복잡하고 난해한 경우에는 더욱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특허소송의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과 법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정확히 말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

14) 1992년 미국기업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미국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소하여 계류중인 건이 1691건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지식재산권 분쟁 사건은 5014건

15) 미국 특허 소송 제도, 실무통신 28호, 6면, 미국 대법원에 상고되어 재 심리한 사건은 평균 2~3년에 1건 정도임

16) 35 USC § 284조

17) 예를 들면 Rite-Hite v. Kelley Co. 사건(56 F.3d 1538 (1995))에서 CAFC는 특허를 침해한 피고의 장치와 직접 경쟁관계에 있는 특허권자의 또 다른 제품의 판매에 대한 상실이익(loss profits)을 인정하였는데, 그 제품은 이 사건의 특허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실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을 승인하였다. 또 Minnesota & Manufacturing와 Johnson & Johnson Orthopedics간의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의 실 손해액의 2배에 해당하는 배상액을 인정한 바 있다.

18) Xerox 판결(In re Indep. Serv. Org. Antitrust Litig., 203 F.3d 1322 (Fed. Cir. 2000))에서 CAFC는 특허권자의 반 경쟁적 거래거절행위에 대하여 독점금지법 위반을 인정한 제 9 연방항소법원의 판결(Image Technical Services, Inc. v. Eastman Kodak Co., 125 F.3d 1195 (9th Cir. 1998))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시장 확장을 위한 특허권자의 권리행사를 보호하였다.

19) Christian A. Chu, Empirical Analysis of the Federal Circuit's Claim Construction Trends, 16 Berkeley Tech. L. J. 1075, 1100 (2001).

20) 1999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 Report of Economic Survey 72 tbl. 22.

21) Mark D Schuman, Esq., 55면.

로 특허소송은 난해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 소송보다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특허소송에서 사실조사절차만 1년 내지 2년의 기간이 소요되며, 또 사실심리기간이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모된다. 사건이 배심재판에 의할 경우 최종 결정문은 즉시 나오게 되나, 판사에 의한 재판일 경우에는 결정문이 받기까지 몇 개월에서 1년까지도 소요된다.

따라서 연방순회 항소법원(CAFC)으로 항소할 경우 모든 절차를 거치는데 8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허소송이 대법원에서 다루어질 경우는 거의 없으나, 만약 대법원이 재심리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통상 1년 이내에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V. 특허소송의 최근경향

최근의 특허소송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되는 특허소송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사실심리(trial)를 거쳐 최종판결까지 가는 건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미국에서 특허소송의 개시 건수와 최종판결 건수를 비교한 통계를 보면 전체 소재기 건수의 2.2%만이 최종판결에 이르렀다.²²⁾ 이를 분석하면 100건의 특허소송 중에서 약 2건만이 최종 판결에 도달했고, 나머지 98건은 중도에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취하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미국의 특허권자는 특허소송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거액의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공판 전에 협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둘째, 미국의 특허권자는 배심재판(Jury Trial)에 의한 판결을 더욱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배심재판은 미국의 가장 특징적인 재판으로 그림 3은 특허소송의 연도별 배심재판 비율²³⁾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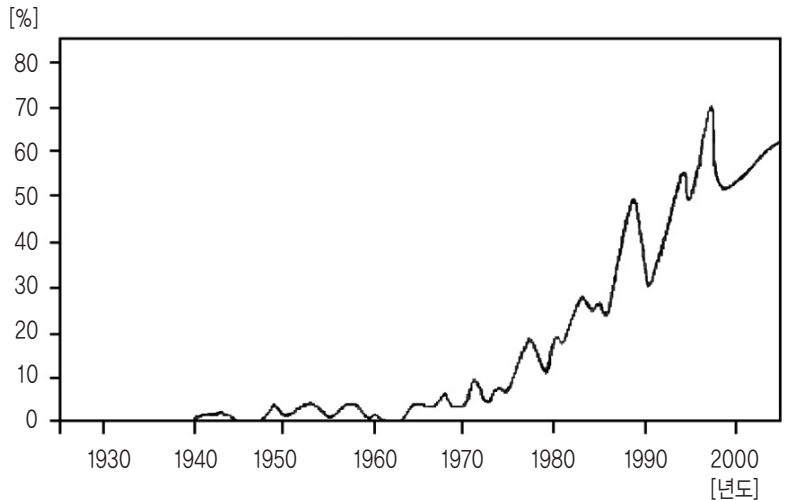


그림 3. 배심재판에 의한 연도별 특허소송 비율

무엇보다 친 특허(Pro-patent)정책을 추진하던 1980년대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최근에는 약 70% 이상의 특허소송 사건이 배심재판을 통하여 수행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판사에 의한 재판보다 배심원에 의한 재판 결과가 특허권자에게 유리하게 나타난 것이 매우 큰 특징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점차로 많은 수의 사건이 공판 전 약식판결(Summary Judgement)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주된 이유로서 1996년 이래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마크맨 구두심리(Markman Hearing)²⁴⁾를 꼽을 수 있다.

이 절차에서 법원은 증거자료와 증언 등에 기초하여 당해 사건의 대상이 되는 특허의 청구범위의 해석을 확정하게 되는데 이것은 특허침해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절차이다. 따라서 침해여부 판단에 관한 결정적인 자료가 확보되면 법률에 의한 판결이 가능한 약식판결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넷째, 특허침해에 대한 배상액이 날로 고액화되어가고

22) Mark D. Schuman, Esq., A Guide to United States Patent Litigation 3rd ed., Merchant & Gould (2003), p.57,

23) Kimberly A. Moore, Judges, Juries, and Patent Cases, An Empirical Peek Inside the Black Box, 99 Mich. L. Rev. 365 (2000).

24) Markman v. Westview Instruments, Inc., 517 U.S. 370 (1996) 사건의 연방대법원의 판결에서 유래한다. 이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특허소송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은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문제로서 배심원이 판단할 사실문제가 아니라 법원의 전속권한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시함.

있으며, 기업들은 선 소송 후 협상의 경향이 강해졌다. 이는 특허집행과 소송을 통한 특허침해 배상금을 새로운 수익원의 창출 도구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1은 1980년부터 2003년까지 특허소송 손해배상금 및 로열티 지급액 상위 1~10위의 현황²⁵⁾을 나타내고 있으며, 모두 친 특허(Pro-patent)정책이 시작된 1980년대 이후에 나타난 사건으로, 특히 1999년과 1996년 현대와 삼성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I)사에게 10억 달러(한화로 약 1조원)의 로열티를 지급한 바 있다.

다섯째, 미국 각 주별로 특허소송 기간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경향을 보인다. 표 2는 2004년도 미국 연방지방법원 각 주의 평균 특허소송기간²⁶⁾을 나타내고 있으며, 각 주마다 평균 특허소송기간이 매우 불균일함을 알 수 있다.

예로, Eastern District of Virginia 법원은 평균 9.2개월의 소송기간을 보이지만, Middle District of Louisiana의 경우 43개월의 소송기간을 보여서, 최대 33개월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그림 4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의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연도별 판결건수 및 평균 소송기간²⁷⁾을 나타내고 있으며, 연방지방법원에서 평균 소송기간은 3.39년이며, 2000년대 이후에 특허소송 건수가 점차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글을 마치며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강력한 국가인 미국은 특허수지 흑자에서도 최고의 지위를 확립하고 있으며, 세계의 모든 국가는 매년 359억 달러(한화로 약 36조원)라는 막대한 돈을 제품의 로열티라는 명목으로 미국에 지불하고 있는 현실이다. 미국의 특허수지 흑자 규모는 2위인 일본에 비하여 7.8배 이상²⁸⁾이며, 특허수지 흑자국 2위에서 5위까지의 모든 특허수지를 합해도 미국의 특허수지에 절

반²⁹⁾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마디로, 특허소송 및 특허수지에 대하여 미국의 영향력은 가히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미국은 특허와 지재권분야에서 세계 중심이고, 특허를 둘러싼 가장 핵심적이고, 최고액의 소송은 모두 미국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허권자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을 하는 미국법원은 판례(判例)주의와 선례구속력(先例拘束力)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으며, 지재권 분야의 사건을 전속 관할하는 미국의 연방소회 항소법원(CAFC)은 미국의 친 특허(Pro-patent)정책을 추진하는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의 역할을 확고하게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소회 항소법원(CAFC)은 첫째, 특허권자에게 최고 3배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으며, 둘째, 특허권 남용(Patent misuse)을 인정한 다른 연방항소법의 판결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셋째, 특허침해가 처음 시작된 시점부터 판결 시까지의 심리 전 판결 이자(Prejudgment interest)를 인정하는 판결을 통하여 친 특허(Pro-patent)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특허소송의 경향은 첫째, 전체소송 중에서 2.2%만이 최종판결이 나오고 97.8%는 특허소송 중도에 당사자끼리 합의하에 취하하고 있으며, 둘째, 배심재판의 비율이 최근에 70% 이상을 선회함으로 특허권자에게 더욱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고, 셋째, 과도한 특허소송 비용으로 인하여 약식판결이 증가하며, 넷째, 법원의 특허침해 배상액은 날로 고액화되어가고, 다섯째, 연방지방법원의 평균 소송기간은 3.39년이지만, 각 지방법원에 따라서 소송기간의 편차 33개월 이상이며, 2000년대 이후에 특허소송 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살펴보았다.

현재 미국법원에서는 수많은 우리기업이 특허소송을 진행중에 있다.

25) Administrative Office of U.S. Courts.

26)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S. Courts, 2004 Annual Report of the Director

27) 특허청, "국제특허분쟁지도", 2005.11, 38면.

28) 미국의 특허수지 흑자액 : 359억 달러/ 일본의 특허지 흑자액 : 46억 달러

29) 미국의 특허수지 흑자액 : 359억 달러/ 특허수지 흑자국 2위에서 5위까지의 특허수지 합계 : 134억 달러/ 미국의 특허수지 흑자액은 특허수지 흑자국 2위에서 5위까지의 특허수지 합계에 약 2.68배이다.

미래의 먹거리를 개발하며, 산업현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세계각국으로 수출하며, 동시에 미국법원에 출성없 는 전쟁을 치르는 우리기업의 선전을 기대하며 이 글을 마친다.

표 1. 1980년부터 2003년까지 특허소송 손해배상금 및 로열티 지급액 상위 1~10위

특허소송 손해배상금 1~10위 (1980-2003년)				
순위	업 체 명	손해배상금	날 짜	법 원
1	Polaroid v. Eastman Kodak	\$873,158,971	91년 01월	D,Massachusetts
2	Eolas Technology v. Microsoft	\$521,000,000	03년 08월	N.D. Illinois
3	City of Hope Medical v. Genentech	\$500,100,000	02년 06월	Sup. Ct. California
4	Johnson & Johnson v. Guidant	\$425,000,000	03년 09월	Arbitration Panel
5	Johnson & Johnson v. Medtronic	\$270,000,000	03년 09월	CAFC
6	Haworth v. Steelcase	\$211,499,731	96년 12월	W.D. Michigan
7	Hughes Tool v. Smith International	\$204,810,349	86년 03월	C.D. California
8	Procter & Gamble v. Paragon Trade	\$178,400,000	98년 01월	D, Delaware
9	Exxon Chemical v. Mobil Oil	\$171,000,000	98년 08월	S.D. Texas
10	Guidant v. Medtronic AVE	\$166,681,773	02년 05월	Arbitration Panel

특허 로열티 지급액 1~10위 (1980-2003년)				
순위	업 체 명	로열티	날 짜	출 처
1	Texas Instruments v. Hyundai	\$1,000,000,000	99년 05월	Wall Street Journal
2	Texas Instruments v. Samsung	\$1,000,000,000	96년 11월	Wall Street Journal
3	Northrop Grumman v. Honeywell	\$440,000,000	01년 12월	Press Release
4	Pitney Bowes v. Hewlett-Packard	\$400,000,000	01년 06월	Wall Street Journal
5	Intergraph v. Intel	\$300,000,000	02년 04월	Wall Street Journal
6	University of Minnesota v. Glaxo	\$300,000,000	99년 10월	Press Release
7	Medtronic v. Siemens	\$300,000,000	92년 09월	Wall Street Journal
8	Intermedics v. Cardiac Pacemakers	\$250,000,000	98년 09월	National Law Journal
9	Gemstar v. General Instruments	\$200,000,000	00년 11월	National Law Journal
10	University of California v. Genentech	\$200,000,000	99년 11월	Press Release

표 2. 2004년도 연방지방법원의 평균 특허소송기간

법 원	Middle District of Louisiana	Western District of Oklahoma	Western District of Wisconsin	District of West Virginia	Eastern District of Virginia
개 월	43.0	13.0	10.5	11.2	9.2
법 원	District of New Jersey	Western District of New York	Northern District of New York	District of Vermont	District of Malne
개 월	33.4	40.0	39.5	36.0	13.0

그림 4.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연도별 판결건수 및 평균 소송기간

